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6제1항 중 “법 제45조의9”를 “법 제45조의17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별표 1 제3호가목1)”을 “별표 1의2 제3호가목1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, 제14조 및 제15조 중 “별표 1”을 각각 “별표 1의2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분양공고안”을 “모집공고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포함한다”를 “포함하며, 임대”의 경우 임대가격을 말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분양”을 “분양 또는 임대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1조제4항”을 “법 제31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3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”을 “관리권자는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업종(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) 또는 사업내용

제44조의4를 삭제한다.

제4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조의5(사업단의 구성) ① 법 제45조의13제1항에 따라 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하는 경우, 공단의 이사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단 구성원을 선임한다.

1. 공단 소속 임직원
2.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·단체·연구소·대학 소속 교수 또는 임직원
-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단의 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·단체·연구소·대학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업단 구성원 중에서 사업단의 단장을 선임한다. 다만, 공단의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단의 단장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④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·설비·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별표 1의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류번호	업 종	분류번호	업 종
10111	육류 도축업(가금류 제외)	10501	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
10112	가금류 도축업	10611	곡물 도정업
10121	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	10612	곡물 제분업
10129	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 (가금류 제외)	10613	곡물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
10211	수산동물 훈제,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	10619	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
10212	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	10620	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
10213	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	10711	떡류 제조업
10220	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	10712	빵류 제조업
10219	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	10713	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
10301	김치류 제조업	10742	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(천연조미료 제조업)
10302	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	10743	장류 제조업
10309	기타 과실·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	10749	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(천연식품 첨가물 제조업)
10401	동물성유지 제조업	10759	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
10402	식물성유지 제조업	10792	차류 가공업
10403	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	10794	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
10796	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(동물고기에 한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한 액화식품 제조)	10795	인삼식품 제조업
10797	건강 기능식품 제조업	10802	단미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
10799	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	16221	목재문 및 관련 제품 제조업
11111	탁주 및 약주 제조업	16229	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
11112	맥아 및 맥주 제조업(맥아제조업)	16232	목재 포장용 상자,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(목재상자 제조업)
11119	기타 발효주 제조업	16300	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
11129	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(과실 및 곡물 증류주와 가향조 제주 제조업)	16291	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
12000	담배제품 제조업	16292	장식용 목제품 제조업
16101	일반 제재업	16299	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
16102	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	20312	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
		20493	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(젤라틴 캡슐 제조업)

별표 2를 삭제한다.

별표 3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류번호	업 종	분류번호	업 종
11201	얼음제조업	17221	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
13104	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	17222	판지상자 및 용기 제조업
13109	기타 방적업	17223	식품위생용 종이상자 및 용기 제조업
13221	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	17229	기타 종이상자 및 용기 제조 업
13222	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 조업	17901	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
13223	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	17902	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
13224	천막, 텐트 및 유사제품 제조업	17909	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
13229	기타 직물제품 제조업	18111	경 인쇄업
13300	편조원단 제조업	18112	스크린 인쇄업
13403	날염 가공업	18113	오프셋 인쇄업
13921	끈 및 로프 제조업	18119	기타 인쇄업
13991	세폭직물 제조업	18121	제판 및 조판업
13999	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 품 제조업	18122	제책업
14111	남자용 겉옷 제조업	18129	기타 인쇄 관련 산업
14112	여자용 겉옷 제조업	18200	기록매체 복제업
14120	속옷 및 잠옷 제조업	20303	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
14411	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	20499	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 학제품 제조업
14300	편조 의복 제조업	22199	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(경화고무 및 그 제품 제외)
14419	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	22232	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 조업(일반 성형용기 제외)
14130	한복 제조업	22241	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14191	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	22249	기타 기계·장비 조립용 플라스 틱제품 제조업
14192	근무복,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	22291	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
14193	가죽의복 제조업	22292	플라스틱 적층,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

14194	유아용 의복 제조업	22299	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
14199	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	33110	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업
14491	모자 제조업	33401	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
14499	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	33910	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
14200	모피제품 제조업	33920	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
15219	기타 신발 제조업	33120	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
15220	신발 부분품 제조업	33931	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
17211	골판지 제조업	33991	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
17212	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	33992	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
		33993	비 및 솔 제조업

별표 4의 분류번호란 “23326”을 “23325”로 하고, 같은 표 분류번호란 “23325”를 “23324”로 한다.

별지 제30호서식 중 “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5항”을 “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7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

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4 중 “같은 법 제45조의9”를 “같은 법 제45조의17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의6(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) ①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의3제3항 및 영 제59조제6항 제3호에 따라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 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.	제2조의6(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법 제45조의17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3조(현지근린공장) ① 영 별표 1 제3호가목1)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”이란 별표 1의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.	제13조(현지근린공장) ① -- 별표 1의2 제3호가목1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② 영 별표 1 제3호가목2)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”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.	<삭 제>

③ 영 <u>별표 1</u> 제3호가목5)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”이란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. 제14조(건축자재업종) 영 <u>별표 1</u> 제3호나목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”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. 제15조(첨단업종) 영 <u>별표 1</u> 제2호마목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”이란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. 제26조(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)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식산업센터의 <u>분양공고안</u>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공급가격(토지매입비, 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역을 <u>포함한다</u>)와 계약금·중도금 등의 납부	③ -- <u>별표 1의2</u> ----- ----- ----- ----- 제14조(건축자재업종) -- <u>별표 1의2</u> ----- ----- ----- ----- 제15조(첨단업종) -- <u>별표 1의2</u> ----- ----- ----- ----- 제26조(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모집공고안</u>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<u>포함하며,</u> <u>임대의 경우 임대가격을 말한</u>
---	--

5.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
6. 해당 회계연도의 예상 대차
대조표와 전 회계연도의 예정
손익계산서 및 예정대차대조
표
- ② 공단은 법 제45조의16제3항
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경우
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
하여야 한다.
1.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실적보
고서
2. 대차대조표
3. 손익계산서
4.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
결손금처리계산서
5.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
운용상황서
6. 자금운용표 또는 재무상태변
동표
7. 그 밖의 결산부속 명세서
<신 설>

제44조의5(사업단의 구성) ① 법
제45조의13제1항에 따라 사업
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을
구성하는 경우, 공단의 이사장
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
는 자 중에서 사업단 구성원을

선임한다.

1. 공단 소속 임직원
2.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
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
기관이나 관계 기관·단체·
연구소·대학 소속 교수 또는
임직원
-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단의
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
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
원과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·
단체·연구소·대학 소속 임직
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
할 수 있다.
-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
라 선임된 사업단 구성원 중에
서 사업단의 단장을 선임한다.
다만, 공단의 이사장은 필요한
경우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단의
단장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④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단의
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
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
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
있다.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

	<u>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</u> <u>필요한 자금·설비·기술 또는</u> <u>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.</u>
--	--